

HS 효성첨단소재(주)

분쟁/책임광물 정책



글로벌소싱팀

2025년 04월 30일

목차

01. 목적.....	2
02. 용어의 정의.....	2
03. 적용범위.....	2
04. 이념.....	3
05. 방침.....	3

01. 목적

본 문서는 HS 효성첨단소재(주) (이하 ‘회사’)가 분쟁/책임광물 채굴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구축 및 협력사의 동참 독려를 통해 해결 및 개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용어의 정의

01) ‘분쟁광물’이란 아프리카 10 개국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등 분쟁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말한다.

02) ‘책임광물’이란 인권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로,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운모를 말한다.

03) ‘RMAP’이란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의 약자로,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광물 이니셔티브)에서 주관하는 분쟁/책임광물 미사용 제련소에 대한 실사 및 보증 프로그램을 말한다.

04)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 1502 조’이란 금융체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법안 중 분쟁광물과 관련된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은 콩고산 분쟁광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자신이 이용한 광물이 콩고 분쟁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05) ‘OECD 실사지침서’란 기업이 이행함으로써 기업운영, 공급망 및 기타 사업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근로자, 인권, 환경, 뇌물수수, 소비자 및 기업지배구조 등에서 발생할 여러 부정적 영향들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권고사항을 말한다.

03. 적용범위

01) 본 규정은 회사의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과 지점,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02) 또한 임직원은 협력사, 대리점, 아웃소싱 파트너 등을 대할 때에도 본 분쟁/책임광물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03) 다만, 본 정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04. 이념

회사는 분쟁/책임광물 채굴로 인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을 구축한다.

05. 방침

판매 자금이 전쟁에 투입되거나, 채굴 시 노동력이 착취되는 등 인권 및 환경 관련 문제가 분쟁광물로 인해 야기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의회의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 1502 조’와 OECD 의 ‘실사 지침서(Due Diligence Guidance)’를 기반으로, 인권 및 환경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구축이 의무화 되었다. 회사는 이에 따라 분쟁/책임광물과 관련한 공급망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01) 회사는 RMAP 인증을 취득한 제련소의 광물만 취급한다.

02) 회사는 협력사가 RMAP 인증을 취득한 제련소와 거래하도록 정기교육 및 분쟁/책임 광물 관리 가이드 제공을 통해 지원한다.

03) 회사는 질의서, 서면 확인 등을 통해 협력사가 분쟁/책임광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04) 회사는 협력사의 공급망에서 분쟁/책임광물 리스크를 도출할 시, 책임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개선을 요구한다.

05) 회사는 분쟁/책임광물 리스크 조사 및 개선 조치에 비협조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06) 회사는 매년 분쟁/책임광물 취급 현황을 공개한다.